

HOME > 로컬+ > 대구·경북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고령 농업인 노후 준비 돕는 '농지연금'

✎ 김병식 기자 | ⌚ 승인 2026.08.14 15:16

만 60세 이상·5년 이상 영농경력 필요...농지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도 가능

농지연금 가입 조건!

가입연령 + 영농경력 + 대상농지

가입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0세 이상**
(연령은 민법상 연령,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적용)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 5년 이상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의 영농경력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농지연금 홍보 포스터 [사진=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평생 농업에 종사한 고령 농업인이 보유 농지를 활용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제도가 노후생활 안정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하면서 연금을 받고,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14일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에 따르면 농지연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농어촌공사로부터 매월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연금액은 가입자의 나이와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가격, 선택한 지급방식 등에 따라 달라진다.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 등으로 구분되며, 배우자 승계 요건을 갖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을 수도 있다.

가입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입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어야 한다. 담보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어야 하고,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담보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한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농지와 주소지 사이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인 경우 등의 요건도 적용된다.

농지연금 가입 조건!

가입연령 + 영농경력 + 대상농지

대상농지

① + ② + ③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②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
*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미설정된 농지

☑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농지연금 홍보 포스터 [사진=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다만 농지에 불법건축물이나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이 있거나 경매·압류 등으로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청 전 개별 농지와 가입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농지연금은 농업소득만으로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어려운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활용해 정기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있다.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를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농지 활용과 노후소득 확보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

가입 및 상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가능하며, 실제 연금 지급액과 가입 가능 여부는 연령과 농지 가격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신아일보] 문경/김병식 기자



김병식 기자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